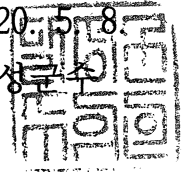


2020년도 (재)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

의 안	1825
번 호	

제출일자 : 2020. 5. 8.

제 출 자 : 달성문화재단



1. 제안이유

2020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(재)달성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: 금200백만 원

-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거버넌스 구축
- 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운영비, 사무관리비 등

3. 출연 심의요구서 : 붙임

4.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: 붙임

5. 출연기관 현황 : 붙임

출연 심의요구서

출연 대상	○ 기 관 명 : (재)달성문화재단 ○ 대 표 : 김 문 오 ○ 일반현황 :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8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연 사업 비	○ 출연 예정금액 : 200백만 원(군비)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 : 백만원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rowspan="2">사업 기간</th><th rowspan="2">2020년 제1회 추경액</th><th colspan="5">재 원 별</th></tr> <tr> <th>계</th><th>국비</th><th>시비</th><th>군비</th><th>기타</th></tr> <tr> <td>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</td><td>6월~ 12월</td><td>200 (기출연 3,958,619천원)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200</td><td></td></tr> </table>							구 분	사업 기간	2020년 제1회 추경액	재 원 별					계	국비	시비	군비	기타	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	6월~ 12월	200 (기출연 3,958,619천원)				200	
구 분	사업 기간	2020년 제1회 추경액	재 원 별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계	국비	시비	군비	기타																					
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	6월~ 12월	200 (기출연 3,958,619천원)				200																						
출연 필요 성	○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,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 ○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추진으로 달성의 문화위상을 제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거 법령	○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(운영재원 등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○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, 보호, 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업 부서 의견 (총평)	○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 ○ 문화예술 중심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○ 각종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사업부서 검토의견서

1.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○ 경영평가(한국정책평가연구원, '19. 4. 19. ~ 6. 12.)

－ 2019년(2018년 실적) 경영실적 평가결과 : A등급(91.28점)

평가분야	평가배점(%)	평가점수	비고
리더십·전략	10	9.03	• 리더십 지표 • 전략 지표
경영시스템	25	23.42	• 운영 적절성 지표 • 인사·조직 지표 • 재무관리 지표 • 예산관리 지표
경영성과	40	35.99	• 사업지표 • 사업성과 적절성 지표 • 고객만족 지표
사회적가치	15	13.08	• 일자리 확대 지표 • 사회적 책임 지표
정책 준수	10	9.76	• 공공기관 정책 준수 지표 • 지자체 정책 준수 지표
총 점	100	91.28	

2.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

○ 2020년 출연금 200백만 원 교부로 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 수행

－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거버넌스 구축

－ 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운영비, 사무관리비 등

3.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9년 결산액	2020년 예산액 (A)	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		
			기관 요구액 (A)	부서 검토액 (B)	증감 (B-A)
총 계	2,233	3,958	200	200	-
기관운영비	해 당	사	항	없	음
인력운영비					
기본경비					
자체사업비	2,135	2,195			-
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			200	200	0
기본재산적립금	해 당	사	항	없	음

출연기관 현황

기 관 명	(재)달성문화재단				전화번호	053.659.4271	
					홈페이지	www.dsart.or.kr	
설립근거	민법제32조,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,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,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						
주요연혁	2011.05.17. 등기						
임원 (19.11.1 현재)	직책	성명	주요경력			임기	
	이사장	김문오	달성군수			재임기간	
	대표이사	서정길	現 달성복지재단 이사장			2018.8.20.~2020.08.19	
	비상임이사	이치우	한국예총대구연합회 부회장			2018.8.23.~2020.8.22	
	비상임이사	김정화	계명문화대학교 부교수(생활음악)			2018.8.23.~2020.8.22	
	비상임이사	서규원	(사)한국사진작가협회 운영자문위원회			2018.8.23.~2020.8.22	
	비상임이사	전유진	비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			2018.8.23.~2020.8.22	
	비상임이사	표준식	달성군 정책관광국장			재임기간	
	감사	김창현	김창현회계사무소 대표			2018.8.23.~2020.8.22	
	감사	김진천	달성군 문화체육과장			재임기간	
주요기능	○ 문화예술의 창작,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○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○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○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기획 및 운영						
최근3년간 예산현황	연 도	2018년	2019년	2020년 (본예산)	재무현황 2019.12.31 기준	자산	6,708백만원
	예산액	4,213	4,866	6,244		부채	3백만원
	지자체 지원액	3,190	3,393	3,958		자본	6,705백만원

1.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
2.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(출연금, 민간위탁금 등)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□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문화예술진흥법 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, 보호, 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

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(기본재산 및 재정지원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.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(운영재원 등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